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2.18.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위임사항의 처리보고”를 “부과·징수 실적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수신자 국세청장”을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목 중 “실적보고서”를 “실적통보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생 략)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위임수 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② ----- ----- <u>징수 수</u> <u>수료</u> ----- ----- -----.
제23조(<u>위임사항의 처리보고</u>)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개 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의 <u>보고</u> 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u>부과·징수 실적등의 통</u> <u>보</u>) ----- ----- ----- <u>통보</u> --- -----.

기 관 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유)
제 목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내용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대상 개발사업	사업 기간		
	위치	면적(㎡)	
부과 구분	개발부담금	원	
	가산금	원	
	과태료	원	
부과일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부과 금액	원		
그 밖의 사항			

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5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분기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물납 등 실적통보서

단위: 원

개발 사업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부 과 일	징수 금액			징 수 일	특별회계 납입		가산금		환급 금액		
	성명 (대표 자명)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계	현금	물납		현금	물납	부과	징수	계	부담금	가산금 등